

● 제296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 폐회중
제2차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20. 9. 9.

운 영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서윤기 의원 등 43명 공동발의
- 나. 제안일 : 2020. 7. 13.
- 다. 회부일 : 2020. 7. 14.
- 라. 의안번호 : 1695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‘자매결연’을 ‘상호결연’으로 함(안 제2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선희)

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(이하 “인권 기본 조례”)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(이하 “인권 위원회”)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현행 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 국외활동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)에 반영하고자 제안됐음.
- 인권 기본 조례 제8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(2016.9.29.개정), 이는 서울시민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.
- 서울시는 인권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권 기본 조례와 관련 기본·시행계획을 근거로 서울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,¹⁾ 그 결과를 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 의결 받아 서울시 자치 법규에 반영하고 있음(2020.4.6. 기준 62개 자치법규 96개 조항).
- 본 개정안은 위 인권영향평가와 인권위원회의 권고 의결 결과를 현행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.

2 ‘자매결연’을 ‘상호결연’으로 변경(안 제2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)

- 2019년 7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수행된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용역의 목표 중 하나는 서울시가 2018년에 수행한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

1) 연구용역명: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, 용역기간: 2019.7.2.~11.22., 수행기관: (재) 서울연구원

참고해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‘사후’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개선안을 제시하고, 이를 서울시 자치법규에 적용해 개선할 부분을 도출해내는 것이었음.

- 해당 인권영향평가는 ▶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, ▶기본권 보장 및 권리 구제, ▶시민참여 보장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고, 평가 결과 62개 자치법규, 96개 조항에 대한 보완·개정이 필요함을 도출했음.
- 현행 조례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부분은 시의회와 외국 도시가 결연을 맺는 것을 ‘자매결연’으로 표현한 부분임.
- ‘자매결연’은 이미 2015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²⁾를 통해 해당 용어는 우열적 관계를 지칭하므로 이를 ‘상호결연’이라는 객관적 용어로 순화할 것을 권고 받은 용어임.
- 이후 서울시의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의견수렴과정에서 서울시 담당 부서는 ‘자매도시’ 용어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어 변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으나, 보고서는 우열적 관계를 반영한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음.³⁾
-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법제연구원은 ‘자매결연’을 ‘상호결연’으로 순화할 것을 권고했고 상위법상에도 ‘자매결연’ 자체에 대한 용어 정의는 없는바,⁴⁾ 현행 조례상의 ‘자매결연’을 ‘상호결연’으로 변경하는 것은 차별적 용어를 객관적 용어로 순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임.

2) 강현철 외(2015), “차별적·권위적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”, 한국법제연구원.

3) 신인철 외(2019), “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”, 서울특별시, p.41.

4) 위의 자료, p.41.

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해 ‘자매결연’ 용어를 ‘상호결연’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제안된 것으로,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됨.